

보도 일시	2022. 12. 16.(금) 15:00	배포 일시	2022. 12. 16.(금) 08:30
담당 부서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	책임자	과 장 오재철 (044-220-4958)
		담당자	조사관 류명석 (044-200-4963)

20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 대기업과 대리점은 동반자로서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2월 16일(금)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하고,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5개 기업에 선정서를 수여하였다.

<20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행사 개요>

일시	2022년 12월 16일(금) 14:00 ~ 15:30
장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
주최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참석 인사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 ○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 김상익 CJ제일제당 부사장 ○ 유 원 LG전자 부사장
행사 주요 내용	○ 격려사(공정거래위원장) ○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서 수여 ○ 기업별 상생 우수사례 발표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리점은 핵심적인 지역 물류 거점으로서, 제품홍보, 정보제공과 더불어 제품 체험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면서,
- “전국적으로 약 19만개의 대리점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등 대리점 유통방식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고 강조하고,

- “대기업과 대리점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이며,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 라고 하였다.
- 이어 한 위원장은 “공정위도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 우선, “내년 3월경 대기업과 대리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한 곳에서 실시하는 창구로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 대리점 관련 각종 제도에 관한 교육과 상담,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에 보다 많은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그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약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맞춤형 혜택 제공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대리점거래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에 거래의 실정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되어 더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 업계 스스로 제출한 상향식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공정위는 이날 선정된 5개 기업에 협약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발표한 우수사례를 설명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전파하는 등 대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1]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결과

[붙임2]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공정거래위원장 격려사

1. 선정개요

- (선정대상)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공정위에 신청한 기업
- (선정기준) 대리점과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새단장(리뉴얼) 비용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¹⁾
 - (필수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해당 업종 표준계약서 조항 50% 이상 사용)
 - (선택요건) 장기 계약, 인테리어 비용지원,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 아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구분	'대리점 동행 기업' 선정 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①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②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새단장(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③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 이상)
④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예]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대리점 홍보·지원, 수익금 분배 등]
⑤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1) 선정일 현재 대리점법 위반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있거나, 중대한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이 조사 중인 경우에는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선정을 유예하며, 공급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대리점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가능

2. 선정 결과

□ 장기 계약 운영, 인테리어 새단장(리뉴얼) 비용지원,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5개사를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

연번	기업명	'대리점 동행 기업' 해당 요건 및 실적
1	대상(주)	○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 이상) - '21년 대리점 판촉비 등 348억 원을 지원하여 '21년도 총매출액 2조 8,752억 원의 1.2%를 지원 (대리점 판촉비 34,180백만 원, 우수대리점 포상 12백만 원, 대리점 판매 인력 및 설비 지원 303백만 원) ※ 이 외에도 321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 운영
2	매일유업(주)	○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기업 - '대리점거래 세부업무지침' 마련·준수 등 계약의 공정성 확립 노력, 대리점지원시스템을 통한 주문내역 확인, 분쟁조정절차 운용, 대리점 판로 개척 지원 등으로 협약평가결과 '최우수'로 선정 ○ 대리점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대리점 평균 실거래기간 11년 5개월)
3	(주)이랜드월드	○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 - 본사 온라인몰에 접수되는 소비자의 상품주문에 대하여 대리점이 판매·배송을 담당하도록 하여 대리점의 수익 증대('20년 200억 원, '21년 220억 원 증대) ○ 대리점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대리점 평균 실거래기간 7년 4개월)
4	CJ제일제당(주)	○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우수' 기업 - 전자계약시스템 마련 등 계약의 공정성 확립 노력, 대리점업무 소과정 전산화 통한 투명성 확보, 판촉 지원(64억 원), 코로나19 상황 대리점 물류 배송 인력 지원(55억 원) 등으로 협약평가결과 '우수'로 선정 ○ 대리점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대리점 평균 실거래기간 12년 9개월)
5	엘지전자(주)	○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소요비용의 70% 이상 지원 - '21년 인테리어 및 리뉴얼 시행 75개 대리점에 총 소요비용 34억 9천만 원 중 28억 2천만 원을 지원 (리뉴얼 총 소요비용의 80.6% 지원) ※ 이 외에도 임차료, 보증금 지원(73억 7천만 원)



공정거래위원회

격려사

- 일 시 : 2022. 12. 16. (금) 14:00
- 장 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8층 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신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다섯개 기업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님,
매일유업 김선희 대표이사님,
이랜드월드 최운식 대표이사님,
CJ제일제당 김상익 부사장님,
LG전자 유원 부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리점 유통의 의의

산업화 시기인 1960년대 이래로
제조업체들은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는 대신
각지에 소재한 대리점을 활용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등장한 대형마트가 급성장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등
유통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은
핵심적인 지역 물류 거점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홍보, 정보제공 및
제품 체험 장소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적인 설치 또는 사후 유지보수가
필요한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전국 곳곳에 공급하는 데에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리점의 기능은 온라인으로는 대체될 수 없어 언택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도 우리 유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리점 유통 분야에서의 상생의 중요성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현재 전국에 약 19만개의 대리점이 존재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유통채널로서 대리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리점 유통방식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대리점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관계라는 인식 하에, 대리점에게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과 지원은

단순히 대리점의 매출 증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기업 자신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은
대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여러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상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돕기 위해

증정품, 홍보물 등의 물품을 제공하는 등

작년 한해동안

연간 대리점 매출액의 약 11%에 해당하는

34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최근 3년 사이 대리점 매출은 40%,

본사의 매출은 35% 증가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유업은

본사의 영업사원들이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빵집, 카페 등을 방문하여 거래를 권유하거나,
무료 강좌를 열어 유제품을 활용한
빵, 음료 레시피를 홍보하는 등
대리점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년 한해동안
총 1,300여개의 거래처를 새로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대리점과 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랜드월드는
온라인 시대에 적합한 상생모델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 온라인몰에 접수되는 소비자의 상품 주문에 대해
그 판매·배송을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하여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추가적으로 올리게 하였고,
신속한 배송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매출도 증대시켜 왔습니다.

다음으로, CJ제일제당은
대리점주나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됨으로써
자가격리 등으로 소매점 등에
배송과 진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리점들을 돕기 위해
특별 TF를 가동하여,

물건을 대리점의 거래처까지 직접 배송해 주고
검수 및 진열작업을 대신 수행해주는 등
세심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하루 확진자가 수십만명에 달하던 시기에 도,
대리점은 거래처를 유지할 수 있었고,
본사는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LG전자는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실시하는 경우
총 소요 비용의 약 80%를 지원하여
대리점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지원을 받은 대리점의 매출은
전체 대리점 평균에 비해 38% 이상 높았고,
이는 곧 본사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이
대리점과의 상생노력을 강화하면,
대리점의 판매역량이 강화되고,
이는 곧 대기업 자신의 매출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한층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 상생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 추진 방향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상생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힘을 실어드리고
좋은 결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정위도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공정위는 내년 3월경에
대기업과 대리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 곳에서 실시하는 창구로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정식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대리점 관련 각종 제도에 대한 교육,
효과적인 준법 방안에 대한 컨설팅,
대기업과 대리점간 갈등 예방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에
보다 많은 업종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그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협약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을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에
거래의 실정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되어
보다 많은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개정하여
업체 스스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업체에서 거래 실정에 맞는
표준계약서 안을 제안해 주시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대리점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환경 변화와 경기둔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동반성장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처럼 대리점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더 행복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유통시장도

상생협력의 기반 위에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